2005. 12. 19(월)~12. 21(수)
제124회 정례회중 산건위 7차회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검 토 경 과

□ 제출일자 : 2005. 11. 21.

□ 제 출 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5. 11. 21.

Ⅱ.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1.총 괄

(단위: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합 계	113,691,602	95,291,326	18,400,276	19.3
일 반 회 계	95,341,831	78,532,292	16,809,539	21.4
기타특별회계	4,225,195	3,268,458	956,737	29.3
공기업특별회계	14,124,576	13,490,576	634,000	4.7

2. 산업건설위원회 내역(일반)

(단위: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산업건설위원회	95,341,831	78,532,292	16,809,539	21.4
경 제 과	5,766,982	4,702,540	1,064,442	22.6
산림환경과	15,010,220	13,200,097	1,810,123	13.7
건 설 과	32,084,836	26,058,236	6,026,600	23.1
도시건축과	6,595,997	6,139,167	456,830	7.4
재난안전관리과	6,732,035	573,421	6,158,614	1,074.0
농업기술센터	22,424,869	21,373,739	1,051,130	4.9
상수도사업소	6,726,892	6,485,092	241,800	3.7

Ⅲ. 실과별 검토사항

1.경제과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59)	5,766,982	4,702,540	1,064,442	22.6
주차장관리특별	738,210	796,869	△58,659	△7.4

○ 예산 증가 요인

예산이 10억 이상 증가한 것은 화강석 특화사업 관련 연구용역비로 균특 예산에서 550,000천원을 계상한 것과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375,000천원이 주요 요인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음.

○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세입 △60,000----P242

불법 주·정차 과태료 세입 60,000천원이 감소한 사유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가 체납이 늘어나서인지 그 설명이 필요함.

2.산림환경과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67)	15,010,220	13,200,097	1,810,123	13.7
수질개선특별	3,404,849	2,380,911	1,023,938	43.0

○ 예산증가 요인

8월 3일 집중호우에 따른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비 13억6천8백만원과 화강석 특화사업관련 용역비등 균특예산에서 4억8천만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임.

○ 산불감시원 순찰오토바이 및 차량방송장비 정비 6,000천원---P172

산불감시원의 순찰 오토바이나 차량방송장비는 매년 반복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구입연도와 장비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수리나 신규 구입 등의 예측이 가능한 것임에도 결산 추경에 와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검토 됨.

○ 산불진화 인력수송 차량 구입(1대) 35,000천원--------P173

산불진화 인력수송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수 승인을 받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구입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1회추경 시 30,000천원을 반영한 후 또 다시 결산추경에 35,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유가 계획수립을 소홀히 해서인지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함.

○ 특별회계 예산 증가 요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10억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은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10억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며 특별한 사항은 없음.

3. 건설과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76)	32,084,836	26,058,236	6,026,600	23.1

○ 예산 증가 요인

예산이 60억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은 8.3집중호우 수해피해 지역 복구사업비와 국·도비 지원사업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도시건축과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83)	6,595,997	6,139,167	456,830	7.4
주택사업특별	82,136	90,678	△8,542	△9.4

○ 특이 사항 없음.

개봉 광장 조성사업비의 도비 지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8백5십만 원이 감된 것은 일시금으로 납입할 것을 예상한 것을 결산 추경 시 감한 것이라면, 융자금회수에 따른 연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87)	6,732,035	573,421	6,158,614	1,074.0

○ 예산 증가 요인

예산이 61억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은 8·3집중호우 수해피해 지역 복구 사업비로 지원된 국·도비가 증가 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증가율이 높은 것은 신설부서이기 때문임.

○ 의용소방대 각종 활동 보상 △5,000천원 ---------- p 195

의용소방대는 군민들이 화재를 당하거나 산불 발생시 많은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인데 예산액의 70% 이상을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하였거나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11,941 --- p191
지하수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용코자 하는 것이라면, 예산을 70%이상 줄여도 조사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6. 농업기술센터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제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97)	22,424,869	21,373,739	1,051,130	4.9

○ 예산 증가 요인
예산이 10억 이상 증가한 것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고정형 직불금과 FTA기금 과원 폐원 지원 사업의 국도비 보조 사업 지원이 주요 요인임.

○ 돼지분뇨 슬러리 저비용 정화처리 △30,000천원 ---- p200
돼지 분뇨슬러지 저비용 정화처리 사업은 농가에게 지원하면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사업은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FTA관련 여비 9,000천원 ---------- p206
- FTA 기금사업 업무추진 여비 2,000천원
- FTA 기금 APC 사업 벤치마킹 5,000천원
- FTA 기금 APC 업무추진 지원사업 2,000천원

FTA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지원되기 시작해서 우리 군도 대단위 APC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연도말에 와서 해외로 벤치마킹을 갈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임.

7.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215)	6,726,892	6,485,092	241,800	3.7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이 사항 없음.

나.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14,124,576	13,490,576	634,000	4.7
상수도특별	6,056,487	5,574,487	482,000	8.6
하수도특별	8,068,089	7,916,089	152,000	1.9

○ 거창취수장 개선공사(펌프 1동, 관리동 1동) 478,529천원 --- P43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거창 취수장 개선 공사를 위하여 전년도에 477,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함이 타당함에도 결산추경에서 공사 사업비가 2배로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